

대덕읍 더포레스트 에코파크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전라남도 장흥군 거주자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4.09.(화)	24.04.19.(금)	24.04.22.(월)	24.04.23.(화)	24.04.29.(월)	24.04.30.(화)~ 24.05.09.(목)	24.05.10.(금)~ 24.05.12.(일)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건본주택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더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더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09.(화)**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장흥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전라남도 장흥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4.19.(금)	24.04.22.(월)	24.04.23.(화)	24.04.29.(월)	24.04.30.(화)~ 24.05.09.(목)	24.05.10.(금)~ 24.05.12.(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견본주택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48번지(대대로 958), 3층)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이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전라남도 장흥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장흥군 행복민원과-21304호(2024.4.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48번지(대대로 958)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4~20층 4개동 총 45세대
[특별공급 16세대(다자녀가구 4세대, 신혼부부 8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000172	01	075.8425C	75C	75.8425	23.0716	98.9141	5.0251	103.9392	73.5725	15	1	3	0	1	5	10	1
	02	084.9631A	84A	84.9631	25.6630	110.6261	5.7092	116.3353	82.3469	15	2	3	0	1	6	9	1
	03	084.9858B	84B	84.9858	25.1166	110.1024	5.6680	115.7704	81.9471	15	1	2	1	1	5	10	1
	합 계									45	4	8	1	3	16	29	3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75C	84A	84B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	2	1	4
신혼부부 특별공급	3	3	2	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0	0	1	1
생애최초 특별공급	1	1	1	3
합 계	5	6	5	1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라인 구분	층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계약후 1개월내)	입주시
75C	15	1호	16층	73,845,000	199,655,000	273,500,000	27,350,000	246,150,000
			8~15층	73,035,000	197,465,000	270,500,000	27,050,000	243,450,000
			5~7층	72,225,000	195,275,000	267,500,000	26,750,000	240,750,000
			2~4층	71,415,000	193,085,000	264,500,000	26,450,000	238,050,000
84A	15	1호	16층	83,565,000	225,935,000	309,500,000	30,950,000	278,550,000
			8~15층	83,295,000	225,205,000	308,500,000	30,850,000	277,650,000
			5~7층	82,485,000	223,015,000	305,500,000	30,550,000	274,950,000
			2~4층	81,675,000	220,825,000	302,500,000	30,250,000	272,250,000
84B	15	1호	16층	83,025,000	224,475,000	307,500,000	30,750,000	276,750,000
			8~15층	82,755,000	223,745,000	306,500,000	30,650,000	275,850,000
			5~7층	81,945,000	221,555,000	303,500,000	30,350,000	273,150,000
			2~4층	81,135,000	219,365,000	300,500,000	30,050,000	270,450,000

IV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50%; 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width:50%; text-align: center;">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모두 부적격 처리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rowspan="2" style="width:25%; text-align: center;">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 style="width:25%; text-align: center;">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IV-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장흥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라남도 장흥군) → 기타지역 거주자(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 ②배점 																																															
당첨자 선정방법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 <th rowspan="2">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 <td rowspan="3">40</td> <td>4명 이상</td> <td>40</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3명</td> <td>35</td> </tr> <tr> <td>2명</td> <td>25</td> </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 <td rowspan="3">15</td> <td>3명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2명</td> <td>10</td> </tr> <tr> <td>1명</td> <td>5</td> </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 <td rowspan="2">5</td> <td>3세대 이상</td> <td>5</td> <td rowspan="2">-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 </tr> <tr> <td>한부모 가족</td> <td>5</td> </tr> <tr> <td rowspan="2">무주택기간(4)</td> <td rowspan="2">20</td> <td>10년 이상</td> <td>20</td> <td rowspan="2">-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5</td> </tr> </tbody>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전라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IV-2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장흥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당첨자 선정방법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전라남도 장흥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라남도 장흥군) → 기타지역 거주자(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4.01. ~ 06.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비고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인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IV-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장흥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p> <p>-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p> <p>■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p> <p>■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라남도 장흥군) → 기타지역 거주자(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p> <p>■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p> <p>-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① 무주택기간</td> <td rowspan="4">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body> </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비고							

IV-4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장흥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라남도 장흥군) → 기타지역 거주자(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4.01. ~ 06.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장흥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p> <p>■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1순위</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라남도 장흥군) → 기타지역 거주자(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p>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④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②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p>비고</p>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4.29.(월) ~ 2024.05.08(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04.29.(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한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가점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가점제)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하여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을 1년 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최근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기재사항 표시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등	
<p>※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p> <p>-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p> <p>-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전체포함"으로 발급</p> <p>※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p>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 접수 시 생략)
	○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가입)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한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하여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 체 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정(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를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 실확인서 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아래 표 참고)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기본증명서	자녀	•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 실확인서 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 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소득세납부입증 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 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 의 관계를 포함하 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에 비치
노부모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및 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을 1년 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최근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기재사항 표시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및 비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기타(가정 확인 서류)	-	• 가정 산정에 필요한 서류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중 가정제 당첨자 서류 참조
대리인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등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기간내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④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세무서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0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장소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 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 건강보험공단 - 홈텍스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 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④ 납세사실증명 (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⑤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종합소득세 납부자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불가자에 해당할 경우)	- 세무서 - 해당직장 - 홈텍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제출 필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또는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이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Ⅷ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현장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당첨자를 판명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

류는 접수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시 사업주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 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한 사업주의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분양사무실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경기도 장흥군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구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함. 따라서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또한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 및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시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대출 안내

- 분양사무소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므로 개별로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야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위탁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대출 알선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잔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위탁사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여야 합니다.
- 입주 및 잔금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잔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탁사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잔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일(잔금일)이 앞당겨질 경우에도 변경된 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탁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404-629899	㈜코람코자산신탁

-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단, 고객센터 차원에서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함)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을 받을 수 없음.
-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분양대금이 동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함. 분양대금 전액이 동 계좌로 납부된 경우에만 한하여 분양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분양사무실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분양사무실에서 수납 불가)
-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함.
-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시 예시 : [예 : 101호 홍길동 → '101홍길동']
- 분양대금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최소 1개월의 환불기간이 소요됨. 해당 기간 동안의 환불이자는 없음.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자격 검증서류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서류검수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해야 함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 본인 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가능)
	○		계약금 입금증	본인	• 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서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본인	• 전자수입인지(https://e-revenuestamp.or.kr)사이트,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하여 출력	

대리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에 주택공급계약 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계약시	○		위임장	-	• 건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본인 이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IX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p>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p> <p>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p>
--

X **유의사항**

▣ 본 건물은 사용검사(2023.12.29.)가 완료되었으며 실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에 관한 유의사항**

수분양자는 본 계약에 대하여 매도자 겸 수탁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해주건설, 시공사 주식회사 뷰텍종합건설, 주식회사 두영종합건설 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이 체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다.

- (1)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 제한 비율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 등에 따라 담보대출이 제한(축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축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 (3) 분양대금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지정·통보하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전액 입금되어야 하며, 동 계좌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4)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부담함) 하자보수책임 등 시공사의 의무는 “주식회사 뷰텍종합건설, 주식회사 두영종합건설”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분양계약 해제(해지)시 분양대금 반환 채무 이행 등 사업시행자의 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해주건설”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 (5) 본 건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주식회사 해주건설)와 수탁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탁자(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 (6) 하자보수 이행책임(미·오시공 포함)과 관련하여 매수자(수분양자)는 수탁자(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시공상의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식회사 뷰텍종합건설, 주식회사 두영종합건설) 혹은 위탁자 겸 수익자(주식회사 해주건설)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 명칭 변경포함) 교체시 매수자(수분양자)는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7) 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또는 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수탁자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통지
2. 수분양자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통지

■ **입주예정일(잔금일)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실입주일에 잔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입주예정일은 계약시 지정된 날짜로 정하되 계약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 할 경우 잔금을 선납입하여야 함. 입주 예정일을 초과 할 경우 미납된 금원에 대하여 년 5.0%의 이율을 적용하여 완납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연체료조로 부과함.
- 입주예정일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일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이 부과됨.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보수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사용승인 후 보급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분양사무실 내 모형 등의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시 실물을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설치되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 (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별도의 구상금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계약면적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 주장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실물, 평면도, 배치도, 조감도, 투시도등 현황관계 및 실물을 꼭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실물을 확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 전 세대내 무단출입 및 세대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의 피해 발생 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관련 홍보물에 표시된 주택 면적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입면(2~16층)의 마감은 수성페인트 마감, 복지시설 및 주차장(1층, 주동출입구)의 마감은 석재(일부 석재뿔칠) 마감이며 입면 마감재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차에 의해 저층부 석재마감 구간이 상이하니 이에 대해 확인하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 당일 혹은 이후에 접수 및 처리 완료 됩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권리는 공동주택 분양자들에게 공동으로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목적물은 시공자의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보증서를 포함한다)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급되는 바, 매수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 관련 사업주체의 일체 의무사항(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입주자대표회로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이 시공자 및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당첨자(예비당첨자) 당첨세대 사전방문 및 방문확인 계약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에 입주자모집을 하는 주택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실제 당첨된 세대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세대 방문 기간 : 별도 문자 안내 예정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되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등이 다를 수 있으며,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마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분할크기, 프레임 재료 및 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사양 등 내용암, 구조경도 등의 결과에 따라 시공되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도 비확장되는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스스로 환기 등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단열재 설치 요구 및 결로 등이 있음을 인지하고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은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등 고정 설치물 설치 부위의 바닥, 벽, 천장 등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침실 불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세대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한 단위세대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생산 자재의 (예: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 천연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요철이 발생한 단위세대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한 단위세대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 (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간섭 및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으므로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승강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기계작동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사무실에 문의 또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홍통 등이 시공되었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내부(창호 표면, 벽체, 천정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실외기 및 보일러 등의 가동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었으나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환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피난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개별검침 방식으로 원격검침은 설치되지 않으며,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강화대리석, 인조대리석, 도배지, 세라믹 타일, 시트지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과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상하부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바닥과 천장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되었으나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위세대 외부 창 한쪽 창에 방충망이 설치되었으며 피난공간은 피난을 위한 공간으로 별도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화재 등 비상시 각 세대 발코니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해 대피 해야하므로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공간에는 어떠한 물건도 적치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피난 사다리를 통해 소음 전달, 누수, 프라이버시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에 피난을 위한 완강기가 10층 이하 전 세대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11층 이상의 세대에는 완강기 대신 대피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별도로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 위치에 따라 교차되어 설치되므로 각 세대별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로 흡오토기기(월패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 입상 배관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환기구의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시공되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소방시설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시공되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구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성능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시공되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선통통, 수전류 등은 성능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시공되었으며, 제품 사양 및 위치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않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창을 통해 외부로 배출해야 함을 인지하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 발코니에 위치하며, 에어컨 사용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니 직접 수동으로 외부 발코니창을 개방하여 환기등을 병행하여야 함을 반드시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허가도서 및 준공도서와 관계없이 전세대 거실과 안방에 무상으로 서비스 설치되었으며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비용은 무상 제공이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합니다.
- 무상 서비스 제공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이 시공되었습니다.**
- **각 실 보일러는 발코니에 설치되며 보일러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시공되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정경구의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위생기구류(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의 설치 위치, 사양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천장 내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세대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 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천장 내 오배수배관은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 되었으며, 배관 유지관리를 위해 천정 점검구가 설치 되었고,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급수요금은 개별 계량기에 의해 부과됩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었으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었으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되어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는 관계법규에 준하여 시공되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높이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외벽에는 보일러 연도가 설치되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해당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

■ 공용홀

- 승강기 홀(공용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 홀(공용홀)은 층별로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개폐유무 등이 상이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환기 및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승강기 홀(공용홀) 설치로 사생활 간섭 및 인접세대의 승강기 소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에 실물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세대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외부 / 내부 여건

-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위치는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장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계약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등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되었습니다.
- 아파트 경관은 인허가 절차에 따라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받아 시공 되었습니다.
- 고층 세대는 옥상 경관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B·1 설치위치, 외부조명 시설, 문주, 담장,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입면계획, 외부 난간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 시공되었습니다.
- 저층부 실은 인근건축물, 주차출입구 등에 의해 소음 및 진동,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건축인허가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 본 아파트 계약체결 이후 주변 건축물의 신축 등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의 모든 D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저연용)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한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소음, 눈부심, 분진,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위치 변경 및 폐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사업지 주변 생활시설로 인한 소음 발생, 상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일조권, 조망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해당시설의 영업제한, 용도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측벽에는 사인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접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사무실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 및 활용되었으며, 비상차 외에는 주차할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포함된 시설물과 기부채납 되지 않는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 아파트 옥상 및 지붕에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단지 배치상 동일 형별(평형) 아파트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식재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1층 LPG가스구역 인근에 설치되었으며 이로 인한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차입구의 위치로 인한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실물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아파트 101동 계단실 창호는 3, 6, 9, 12, 15층에 1개소씩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거 전용 주차장은 단지 통합으로 지상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법정 주차대수는 총 45대(주거전용 4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당 주차대수는 1.08대로 계획되어 있음.
- **주차관제 시스템 및 주차 차단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거시설(아파트)의 주차공간은 주차장 진출입 및 이용 동선으로 인해 주변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의 사용은 각 세대별로 구획되거나 구분 및 배정되어있지 않습니다.
- **당사업지의 주차장 내부 차로 높이는 법정 높이 2.1m 보다 높은 3.3m 입니다.**

- 단위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VII- 0.917g 임.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승강기 소음이 일부 발생 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옥탑, 지붕 및 지상 일부 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판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이 공용홀 지상 1층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크기, 사양, 디자인 등 이에 대한 이의 및 조정을 요구할 수 없고 이용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수도 공급을 위하여 복층 도로 인근에 맨홀이 설치 되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 후 시공완료 되었습니다.
- 각종 인입(상수/하수/오수/가스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 건물 지하에 설치되는 저수조, 우수 처리시설 등의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실, 발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해 외벽에 D.A 및 그릴이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에 대한 지상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 및 공용시설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및 분할창호 설치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으며, 단지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관리사무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 운영 및 관리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D/A(설비환기구))이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재활용 집적소, 재활용 창고, 야외 실외기실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주차 및 충전시설의 위치는 지상 1층 주차장에 2개소 있으며, 해당 설비의 이동은 불가합니다.
- 지하 1층에는 저수조, 소화저수조, 발전기실, 전기실이 위치 하고 있으며 지상1층에 제연철탄, 통신실, 창고, 관리실(방재실)과이 위치 하고 있습니다.

■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한 해당 동 라인의 경우 저층 세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보행자에 의해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특히, 지상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위한 시설물(D/A)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재활용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조경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형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학교인접 등), 주변개발, 조망권, 소음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근접한 세대는 승강기 소음이 일부 발생 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확인 바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분양사무실 및 현장 실물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XI 기타사항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의무사항 이행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은 기밀성능 1등급 이상 제품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고효율 펌프, 전동기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 설치
	일괄 소등스위치	적용 세대내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고효율 조명기구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용 단지내 공용화장실에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설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적용 세대간 바닥 충격 차단시험 진행완료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보고서	적용 세대내 대기환경오염 측정 시험 진행완료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	전 기, 정보통신 및 소방
회사명	(주)미드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주)미드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감리금액	226,500,000	27,06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위탁사	시공사1	시공사2
상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주식회사 해주건설	주식회사 뷰택종합건설	주식회사 두영종합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201호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5번길 16, 101동 231호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17-21, 1층(오룡동)
사업자등록번호	107-86-07628	218-86-00925	603-81-89477	518-86-00183

분양사무실 :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48번지(대대로 958) 1층 컨테이너 사무실
 사 업 지 :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48번지(대대로 958)
 분양문의 : 1544-4030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